

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(의안번호 제575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9. 10. 5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1999. 10. 6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1999. 10. 25

총무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개정이유

-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군민의 입장에서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를 정비하기 위함.

3. 주요골자

- 선발된 장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정지사유 완화(안 제6조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행정규제 완화 및 자치법규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본 조례안의 제6조 중 내용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보완함은 타당하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타시군 전출의 정의는
- 답 : 전 가족이 이주하였을 경우에 한함.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 : 1999. 10. 25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